#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691

발의연월일: 2021. 12. 3.

발 의 자:조경태·김용판·박완수

백종헌 • 이채익 • 조명희

지성호 • 태영호 • 하영제

홍문표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.

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'준수하다'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'지키다'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5제3항 및 제4항).

법률 제 호

###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5제3항 중 "준수하여"를 "지키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 단 중 "준수하여야"를 "지켜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	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
공표) ①・② (생 략)	공표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	3
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	
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	
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	
이 공표하는 사항을 <u>준수하여</u>	<u>지키며</u>
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(이	
하 "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"이	
라 한다)을 수립·공표하여야 한	
다.	
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	<b>4</b>
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	
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	
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	
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	
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	
입학전형시행계획(입학전형자	
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)을	
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이	
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	
형기본사항을 <u>준수하여야</u> 한다.	<u>지켜야</u>
⑤・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